

- 이 추록은 『2026 코어 세법학』 제12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
 - 코어 세법학 제 12판 제1쇄(유은종 저, 2026.3.20.펴냄)
- 이 추록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추록 (2026.6.30. 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
p.337	오른쪽 상 17 ~ 상 18	다만, 2026년 <u>6월 30일</u> 까지는 206원/kg으로 한다.	다만, 2026년 <u>7월 31일</u> 까지는 206원/kg으로 한다.
	오른쪽 하 5 ~ 하 4	<u>2025년</u> 12월 31일까지 10.2원/kg	<u>2026년</u> 12월 31일까지 10.2원/kg